

국제물품매매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 CISG(1980)와 PICC(2004)를 중심으로 -

황 지 현* · 최 영 주**

-
- I. 서 론
 - II. 손해배상의 일반적 고찰
 - III. 손해배상액 산정
 - IV. 손해배상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점
 - V. 결 론
-

주제어 :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액 산정

I. 서 론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금전적 및 부수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경우, 피해당사자는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 송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강사

** 송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강사 (교신저자)

계약위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금전상의 문제로 연결됨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CISG에 규정된 구제권들 중 매수인¹⁾과 매도인²⁾ 모두에게 인정되는 가장 기본적인 구제권으로, 다른 구제권과 연계하여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피해당사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적인 구제권 중 하나인 손해배상청구권을 CISG(1980)³⁾와 이를 보충·보완하는 PICC(2004)⁴⁾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PICC는 CISG보다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CISG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자율 문제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통화 등을 PICC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CISG와 PICC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⁵⁾

1) CISG 제45조 제1항 b호 참조.

2) CISG 제61조 제1항 b호 참조.

3) 1980년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에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를 개최한바, 4월 10일 ULIS와 ULF를 기초로 하여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할 국제적인 통일법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을 채택하였으며, 본 협약은 1988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 비준서를 기탁하여, 2005년 3월 1일에 발효하였다. 2012년 8월 현재, CISG의 체결국은 78개국이다.

4) PICC(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 이하 'PICC'라 한다)는 국제적인 보편성과 거래당사자간의 형평성을 바탕으로 확립된 국제상사계약원칙으로, CISG를 기초로 1994년에 제정되었으며, 시행상의 경험을 통하여 PICC(1994)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채권양도, 채무이전 및 계약양도, 상계, 대리인의 역할, 제3자의 권리, 제소기한 등)을 추가·신설하여 PICC(2004)를 개정하였다(S. Vogenauer & J. Kleinheisterkamp, Commentary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Oxford University Press Ltd., 2009), pp.3-12)

5) PICC는 CISG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거나 불충분하게 다루어진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CISG를 보완하고 해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CISG 제7조에 의하여 '협약해석의 일반 원칙'으로 판사나 중재인이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PICC는 대상을 특정 종류의 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계약법 일반을 널리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계약법 원칙으로써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B. Zeller, Damages unde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Ltd., 2009), pp. 211-214 ; M. Bridge,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5-6).

피해당사자는 먼저 계약위반의 원인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⁶⁾ 계약위반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면 피해당사자는 계약위반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⁷⁾ 그러나 계약위반이 그러한 면책사유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자는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기준에 따라 피해당사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함으로써, 피해당사자의 손해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실무상에서 계약위반이 발생하여 실무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응하고자 할 때 모호한 규정이나 판단곤란한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이러한 사안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과 관련된 최신의 판례들도 함께 검토하였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다수 있지만,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이 다루고 있지 않은 손해배상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점을 그 중심에 두고 고찰함으로써 실무에 기여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지침이 되고자 한다.

II. 손해배상의 일반적 고찰

1. 손해배상의 의의

손해배상의 목적은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이 원래대로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함인

6) 면책사유의 예로는 태풍·홍수·홍작·지진과 같은 천재지변(act of God), 수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항구나 공항의 폐쇄·대외지급정지·물품압류와 같은 법적장애, 내란·혁명·전쟁·동맹파업·폭동과 같은 정치적·사회적 재난 등이 있다.

7) 유의할 것은 면책은 손해배상에만 적용되므로 면책되더라도 다른 구제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면책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만 행사하지 못할 뿐, 다른 구제권인 대금감액권, 계약해제권, 이행청구권, 이자청구권 등은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 CISG는 제79조와 제80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PICC는 제6.2.1조~제6.2.3조(이행가혹)와 제7.1.7조(불가항력)에 규정을 두고 있다.

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위반이 발생할 경우 금전적 및 부수적인 손해를 입은 피해당사자는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계약위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CISG에 의하면, 계약체결시에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하는 손해,⁸⁾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⁹⁾, 면책되는 경우에 의한 손해¹⁰⁾, 피해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손해¹¹⁾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시 손해는 계약위반에 의해 발생한 손해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위반과 손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때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가 아닌 사실적 인과관계이면 충분하다.¹²⁾ 즉,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방당사자가 계약위반을 하고, 그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야 하

8) CISG 제74조 제2문 참조.

9) CISG 제77조 참조; 이 규정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당사자에게 손해경감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신의칙상 회피가능한 손해는 배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한다(Schlechtriem(Hrsg.), Kommentar zum Eingeitlichen UN-Kaufrecht-CISG-,4.vollig neubearb. Aufl. C.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ünchen, 2004, Art.77, Rn.5).

10) CISG 제79조 참조;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여부를 두고, 실무상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면책규정의 모호한 표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후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면책사유를 대비하기 위하여 실무자들은 계약서 작성시 불가항력조항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불가항력조항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분쟁시 계약서상의 불가항력조항은 각국의 법체계하에서 자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불가항력조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판시된 분쟁사례(case by case)를 통해서 시사된 점을 기초로 하여 면책조항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삽입해야 할 것이다.

11) CISG 제80조 참조.

12) 독일의 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피고(독일회사)가 불일치한 물품을 인도하여 원고(이란회사)가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이러한 계약위반과 손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CLOUT Case No. 596: Germany, Oberlandesgericht Zweibrücken, 7 U 4/02, 02/02/2004); 스위스의 한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가 계약물품이 아닌 이와 유사한 물품을 인도하였는데, 이에 법원은 피고가 물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것은 계약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계약위반과 손해사이에 사실적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CLOUT Case No. 932: Switzerland, Obergericht des Kantons Thurgau, ZBR.2006.26, 12/12/2006).

며,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당해 위반의 결과로, 계약위반과 손해사이에는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가 필요하다.¹³⁾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위반이 이루어져야 행사할 수 있지만, 장래의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¹⁴⁾ 또한 계약체결전의 기간동안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¹⁵⁾ 다만 간접의무의 위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¹⁶⁾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구제권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없이 계약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행사할 수 있다.¹⁷⁾

2. 다른 구제권과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은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다른 구제권과 함께 행사할 수 있다.¹⁸⁾ 그러므로 계약해제시, 대체품인도청구시, 하자보완청구시, 대금감액권 행사시에도 여전히 손해가 남아있다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이자를 청구한 후에도 손해가 남아있다면, CISG 제78조에 의거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매도인이 부적합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부적

13) H.V. Houtte,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1995), p.146.

14) CISG 제72조 참조.

15) 예컨대, PICC 제2.1.15조 약의에 의한 협상인 경우, 제2.1.16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18조의 착오, 사기, 강박 또는 현저한 불균형의 경우이다(오원석·최준선·허해관 공역,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법문사, 2006), p.257).

16) 예컨대, 물품의 검사의무(제38조 제1항), 하자통지의무(제3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손해경감의무(제77조)는 간접의무이므로 그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자가 불이익을 받을 뿐이다(최홍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p.174).

17) Treitel 교수에 따르면, CISG는 어떠한 구제권의 행사요건으로도 과실의 존재여부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G.H. Treitel,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A Comparative Account*, (Clarendon Press, 1988) pp.23-24), 고의·과실불문주의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18) CISG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매수인은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매도인은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합한 물품의 수령과 함께 간접손해를 입었다면, 매도인에게 부적합한 물품에 대해 대금감액권을 먼저 행사하고, 간접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¹⁹⁾ 다만 대금감액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의 범위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피해당사자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구제권들은 모두 상실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해제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행사가 가능하다.²⁰⁾ 즉, 계약해제 선언후, 피해당사자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계약위반자에게 손해배상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당사자가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해당사자는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행의 지연이나 그 이행과정에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청구를 위해 부가기간을 지정한 후, 그 기간내에 이행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부가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²¹⁾

또한 하자보완청구권을 매수인이 행사하였을 경우, 하자가 보완된 후에도 매수인에게 손해가 남아있다면 매수인은 CISG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을

19) 오스트리아의 한 판례를 살펴보면, 매도인(싱가포르)의 물품부적합으로 인한 계약위반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법원은 매수인(호주)은 대금감액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간접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Unilex [2003] WASC 11 CIV 1647 of 1998 ; Australia 17/01/2003).

20) 캐나다의 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피고(미국회사)가 계약기간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것은 본질적인 계약위반이므로 원고(캐나다회사)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CLOUT Case No. 859: Canada,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 No. 1702, 26/04/2004); 스위스의 한 판례에서도 법원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것은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므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CLOUT Case No. 936: Switzerland, Federal Court, 4C.94/2006, 17/07/2007).

21) 현실적으로 국제물품매매에서는 양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기 때문에,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위반자에게 이행을 요청하기보다는 본질적 계약위반인 경우, 피해당사자는 계약해제를 선언한 후에 다른 곳에서 대체품을 구입하고, 그 차액을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CISG 제77조 손해경감의무에 근거하여 손해를 경감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R.G. Lee,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Business Law, 1993), p.138).

행사할 수 있다.

Ⅲ. 손해배상액 산정

1.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1) 손해배상액 산정의 일반원칙

손해배상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 예견가능했던 손해이어야 한다.²²⁾ 즉 손해배상은 완전배상과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위반자가 계약체결시에 예견가능했던 손해이다. 즉 예견가능성의 대상은 계약위반이 아니라 손해이며, 예견가능성의 시점은 계약체결시이다.²³⁾ 또한 예견하는 주체는 계약위반자 자신이 아니라, 유사한 상황하에 있을 합리적인 계약위반자가 기준이 된다.²⁴⁾

손해배상액은 계약위반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아 계약체결시에 계약위반의 결과로서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하였어야 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피해당사자에게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가하면서, 제77조에 규정된 손해경감의무 위반시 계약위반자는 동 의무의 이행으로 경감되었어야 했던 손실만큼 그 금액을 손해액에서 감액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²⁵⁾

22) CISG 제74조 참조.

23) 최홍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p.175.

24) F. Ederlein, & D.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Oceana Publication, 1992), pp.300-301.

25) 이병문, “유럽매매원칙상 매수인의 구제제도”, 「무역학회지」 제34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9). p.481; CISG 제77조에 의하면, 피해당사자는 계약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피해당사자가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위반자는 경감되어야

2) 손해배상의 범위

(1) 상실이익의 완전한 배상

손해배상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a sum equal to the loss)으로 하여야 한다.²⁶⁾ 즉, 피해금액과 동등한 금액으로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계약위반자에게 완전배상에 입각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²⁷⁾

손해배상액은 완전배상 이상의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완전배상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배제한다는 것은 손해경감에 관한 법규정의 기초가 되었다. 예컨대, 매도인의 과실로 물품이 불인도 되어, 그로 인해 매수인이 보관료를 경감하게 되었다면 매수인의 손해배상액은 그 만큼 감해져서 청구되어야 한다. 즉 계약이행의무로부터 해방됨에 따른 결과로서 경감된 비용은 손해배상액 청구시 감해져야 한다.²⁸⁾

PICC 제7.4.2조 역시 완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완전한 배상(full compensation)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손해는 피해당사자가 입은 모든 손실과 그가 상실한 모든 이익을 포함하되, 피해당사자가 그의 비용이나 손해의 발생을 피하게 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공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손해는 육체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비금전적일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했던 손실만큼 손해액에서 감액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당사자가 제77조에 따른 손해경감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우선, 제74조나 제75조 또는 제76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총 손해액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경감되어야 했던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다. PICC 제7.4.8조 역시 피해당사자는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하는데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당사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피해당사자가 손해를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하여 기다렸다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6) CISG 제74조 참조.

27) 그러나 손해배상액은 원상회복의 개념이 아닌 금전상의 배상이므로 피해당사자를 원상회복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28) G.H., Treitel, *op. cit.*, p.77.

(2) 예견가능한 손해의 배상

손해배상은 계약체결시에 예견가능했던 손해이어야 한다.²⁹⁾ 예견가능성의 여부는 계약위반자가 위반결과를 예견할 수 있게 하는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³⁰⁾ 그러나 계약위반자가 위반결과를 예견가능하도록 하는 사실과 사정을 실제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면 위반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³¹⁾ 계약위반자가 위반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시점으로 판단한다. 즉, 예견가능성의 판단시점은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다. 만약 계약위반자가 계약체결시점 이후에 예견할 수 있게 된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계약체결시 예견할 수 없었다면 CISG 제74조에 의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³²⁾

예견가능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는 CISG 제74조는 PICC 제

29) CISG 제74조 참조; 그러나 예견가능한 손해라는 것은 상당히 모호한 표현이며, 이를 판단하는 것도 판사나 중재인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에서는 계약서 작성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책임제한 조항을 명확히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0) 예견가능성의 원칙은 영국의 1854년 원고(Hadley) v 피고 운송인 (Baxendale)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하여 기초가 마련되었다. 영국 글로우스터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원고(Hadley)는 제분기의 회전축이 부러졌다. 원고는 새로운 회전축을 제조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두 개의 회전축 중 하나를 견본으로 보내려고 피고 운송인(Baxendale)에게 그리니치로 운송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태만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늦게 제조업자로부터 새로운 회전축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여분의 회전축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회전축의 운송기간동안 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공장조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운송인은 원고의 조업중단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 운송인에 대한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인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인한 이유는 방앗간에는 대체회전축이 있는 것이 통례이며, 원고는 방앗간에 대체회전축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 운송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피고 운송인 역시 원고의 방앗간에 대체회전축이 없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Hadley v Baxendale (1845) 9 Ex. 341, 156 Eng. Rep. 145;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pp.280-281 참조).

31) 배준일, “UN統一賣買法上の損害賠償責任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38.

32) C.M. Bianca & M.J. 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Giuffre Milan, 1987), pp.541-542.

7.4.4조와 일치한다. PICC 제7.4.4조는 계약위반자가 자신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계약체결시 예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견가능성의 원칙은 피해당사자가 계약위반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³³⁾

2.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액 산정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하여 CISG는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in a reasonable manner)으로 합리적인 기간내에(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avoidance) 대체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제75조)와 대체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가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제76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대체거래 O (제75조)	계약가격과 대체거래시(재매각 or 대체품의 매입)의 가격과의 차액 + 제74조에 의한 추가손해배상액
대체거래 X (제76조) (시가거래 O)	계약가격과 계약해제시(물품수령 전)의 시가와의 차액 + 제74조에 의한 추가손해배상액
	계약가격과 물품수령시(물품수령 후)의 시가와의 차액 + 제74조에 의한 추가손해배상액

1) 대체거래시 손해배상액 산정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해제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내에 대체거래³⁴⁾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해당사자는 계약가격과 대체거래시의 차액을

33) CISG 제74조 제1문은 완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제2문에서는 예견가능성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결국 제한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pp.277-288; Schwenzer, Commentary on Art. 74, IN: Ingeborg Schwenzer(ed),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1000).

34) 대체거래라 함은 매수인의 경우에는 대체품의 매입을 말하며, 매도인의 경우에는 물품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이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제74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³⁵⁾ 일반적으로 제74조에 근거하여 회수할 수 있는 추가손해배상액은 물품의 전매에 따른 추가비용과 손실 등을 포함한다.³⁶⁾ 다만 회수가 가능한 손해배상액은 제74조에 명시된 예견가능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³⁷⁾

PICC 제7.4.5조 역시 CISG 제75조와 일치한다. 피해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합리적인 기간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체거래를 한 경우에 피해당사자는 계약가격과 대체거래가격과의 차액 및 기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을 해제하고 대체거래를 하여 그 차액과 추가적인 손해를 배상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피해당사자의 자유이다. 그러나 피해당사자는 손해경감의무(제77조)에 의하여 대체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2) 시가거래시 손해배상액 산정

CISG 제7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계약해제가 있어야 하고, 둘째, 대체거래가 없었어야 하며, 셋째 시가(current price)³⁸⁾

재매각이나 전매를 말한다. 합리적인 대체거래라 함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대체품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높은 가격으로 재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35) CISG 제75조 참조; 독일의 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원고(이탈리아 회사)가 물품을 불인도 한 것은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독일회사)는 물품대금과 대체거래의 차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CLOUT Case No. 595: Germany, Oberlandesgericht München, 7 U 2959/04, 15/09/2004); 스페인의 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매도인(피고)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매도인에게 하자물품에 대한 대체거래비용과 공선운임 등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다(CLOUT Case No. 850: Spain, Audiencia Provincial de Madrid, sección 14a, 92/2007, 20/02/2007).

36) 예컨대, 지체손해나 검사비용, 보관비용, 반송비용, 또는 대체거래에 의한 운송비용 등이 있다(최홍섭, 전거서, 2005, p.177).

37) 이천수, “CISG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3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 p.14.

38) 물품인도가 이루어져야 했던 장소에서의 지배적인 가격(the price prevailing at the place where delivery of the goods should have been made)을 시가라고 하며, 만약

가 존재해야 한다.

계약해제후 대체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계약가격과 계약해제시의 시가와와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이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제74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시의 시가 대신 물품을 수령한 시가를 적용한다.³⁹⁾

PICC 제7.4.6조 역시 CISG 제76조와 일치한다. 피해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체거래를 하지 않았으나, 적용될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당사자는 계약가격과 계약해제시의 시가와와의 차액 및 기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시가(時價)라 함은 인도된 물품이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이 이행되었어야 했던 장소에서 유사한 상황하에서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가격을 말하며, 동 장소에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용하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다른 장소에서의 시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자에 기초한 손해배상액 산정

일방이 물품대금이나 기타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회복이 가능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해함이 없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⁴⁰⁾

그 장소에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다른 장소에서의 가격을 시가로 하고, 물품운송비용의 차이를 추가하게 된다(CISG 제76조 제2항). 시가는 계약해제시 or 물품수령시의 시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9) CISG 제76조 제1항 참조; 대체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전이라면 계약가격과 계약해제시의 시가와와의 차액이, 만약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라면 계약가격과 물품수령시의 시가와와의 차액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된다.

40) CISG 제78조 참조;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한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매수인)는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인도받은 견직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자없는 정상물품의 대하여도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매도인)는 정상물품에 대하여는 대금과 제78조에 근거하여 대금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CLOUT Case No. 823: Germany, Oberlandesgericht Köln, 16 U 17/05, 13/02/2006); 스위스의 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피고에게 대금 잔액 전부를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제78조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지급기일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CLOUT Case No. 935: Switzerland, Handelsgericht des Kantons Zürich,

이자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자를 청구하고도 여전히 손해가 남아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피해당사자는 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만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자청구권이 갖는 의미는 면책사유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이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전채무의 만기시이다. 대금지급채무는 그 이행기이고, 비용상환채무는 청구권발생시이다. 계약해제로 인한 대금상환채무는 대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이자가 계산된다.⁴¹⁾

입법과정에서 이자율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여 CISG에는 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이자율 문제는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준거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CISG를 해석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PICC 제7.4.9조(금전 부지급에 기한 이자)와 제7.4.10조(손해배상금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1) 금전 부지급(不支給)에 기한 이자

PICC 제7.4.9조는 금전 부지급에 기한 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약정된 금액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급지연으로 입은 손해는 특별규정에 따라 지급만기시와 실제지급시간의 약정금액에 대한 이자를 일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⁴²⁾

2) 손해배상액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

PICC 제7.4.10조는 손해배상액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 당

HG050430, 25/06/2007).

41) CISG 제84조 제1항 참조.

42)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한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독일회사)가 물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물품대금과 대금지연에 대한 이자를 원고(헝가리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CLOUT Case No. 721: Germany, Oberlandesgericht Karlsruhe, 7 U 101/04, 08/02/2006).

사자간의 합의나 또는 판사나 중재인에 의해서 산정된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발생시점은 계약위반자의 의무불이행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왜냐하면 계약위반자는 손해배상액을 피해당사자에게 지급하기까지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자를 자신의 이익으로 수취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피해당사자의 자산은 손해의 발생과 동시에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위반자의 그러한 이익은 피해당사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발생시점은 계약위반자의 의무불이행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3) 이자율

이자율에 관해서는 그 기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CISG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한다.⁴³⁾ 그러므로 이자율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국내법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에 의해 국제사법이 정하는 준거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CISG의 불명료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PICC가 일반원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PICC에 규정된 이자율에 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PICC에 제7.4.9조 제2항은 지급통화에 대한 지급장소에서 우량대출자에게 널리 적용되는 평균은행의 단기대출이자율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그럴 수 없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통화국의 평균은행 단기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장소 모두에서 그러한 이자율이 없는 경우, 지급통화국의 법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통화

국제물품매매는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계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지므로,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느 국가의 통화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시 될 수 있다. 손해배상액산정의

43) Lando/Beale(e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 and II(Combined and Revised),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2000), note No.1, p.452.

기준통화는 CISG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PICC 제7.3.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당해 금전채무의 표시통화와 손해발생통화 중에서 보다 적절한 통화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완전배상의 원칙에 따라 피해당사자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금전채무의 표시통화와 손해발생통화 중에서 상황에 가장 적합한 통화를 선택할 수 있다. 피해당사자가 손해발생통화를 선택한 경우, 손해발생통화가 계약통화와 다르더라도 피해당사자는 손해발생통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피해당사자는 이자나 약정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계약통화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IV. 손해배상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점

1.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1) 문제의 제기

계약위반 발생시 예컨대, 매도인이 선적기일을 지연하거나 매수인이 L/C 개설을 지연하는 경우, 피해당사자는 계약위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계약위반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

2) 실무상 유의점

실무에서는 매도인의 선적지연이나 매수인의 L/C개설을 지연시를 대비하여 약정손해배상액조항(liquidate damage clause)⁴⁴⁾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을 구제하는데 사용하고 있다.⁴⁵⁾ 약정손해배상액⁴⁶⁾조

44) 공산품과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비교적 간단한 무역계약에서는 약정손해배상액 조항이 자주 사용되지 않으나, 一次産品과 관한 國際標準契約書 등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오원석, “國際物品賣買契約에서 ‘Liquidated Damage Clause’의 有效性과 實務的 適用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p.71).

항이라 함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계약위반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피해당사자가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입증이 곤란하고 다툼이 생길 소지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입증의 곤란과 다툼을 예방하고 의무의 이행을 간편하게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계약위반이 발생할 때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계약체결시 양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두는 것이다.

PICC 제7.4.13조는 계약에서 계약위반자가 자신의 불이행에 대하여 피해당사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피해당사자는 자신의 실제손해와는 상관없이 동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약정금액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과도한 때에는 이를 합리적인 정도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⁷⁾

그러므로 국제물품매매에서 계약체결시 실무적으로 계약서에 약정손해배상액 조항을 삽입할 경우,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만 존재하면, 피해당사자는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약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이행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간의 이행보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 청구보증(demand guarantee)⁴⁸⁾을 청구보증통일규칙

45) ICC표준국제매매계약서(The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 일반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약정손해배상액 조항에 의하면, 매도인이 물품인도를 지연할 경우, 1주일 지연한 것에 대한 지연된 물품대금 0.5%를 매수인은 약정손해배상액으로 회복할 수 있으며, 단 이 금액은 5%를 넘지 못한다. 만일 인도지연이 10주가 되면 매수인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인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인도지연이나 불인도에 따른 약정손해배상액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약정손해배상액 이외의 추가로 발생한 손해액을 불인도한 물품의 10%범위 내에서 매수인은 입증된 손해액에 대하여 회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6) 약정손해배상액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제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47) 이탈리아의 회사와 중동국가 정부기관과 계약에서 합의한 약정손해배상액이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액보다 지나치게 과도하여 중재에 회부되었는데, 중재원은 판정의 근거로 PICC를 적용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약정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감액하도록 판시하였다(I.C.C. Case No. 8261(1996)).

48) 청구보증은 현금예탁의 대응으로 즉, 기초계약(underling contract)상의 상대방(의 불이

(URDG758)에 따라 확보하거나,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⁴⁹⁾을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에 따라 확보하는 것이 좋다.⁵⁰⁾

따라서 계약체결시 양 당사자가 충분히 합의한 후, 약정손해배상액조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간의 이행보증을 받아 놓음으로써, 피해당사자는 분쟁발생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이자지급청구시 이자율적용의 곤란성

1) 문제의 제기

CISG 제78조는 연체된 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되어야 할 이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자지급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떠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시된다.⁵¹⁾ 이자율 문제는 CISG 제7조 제2항에 의거하

행)에 기하여 수익자에게 신속한 금전배상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지급청구서(written demand) 및 기타 명시된 서류가 제시되는 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청구보증의 보증인은 지급청구에 대하여 실제로 기초계약의 위반이 있었는지 혹은 수익자가 실제로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최대보증금액을 한도로 원칙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오원석·허해관·김중년 공역(Roy Goode 지), 「ICC국제상업회의소 청구보증통일규칙 가이드」, 도서출판 두남, 2008, pp.1-2).

49) 수출거래에 사용되는 보증신용장에는 상업보증용·구상보증용·이행보증용 등이 있는데, 상업보증용은 수출상에게 수출대금지급을 확약하며, 구상보증용과 이행보증용은 수출상의 이행을 확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이행보증용(performance standby)은 개설의뢰인이 금전채무 이외의 계약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약정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증신용장으로서, 개설의뢰인 기초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수익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50)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는 보증조항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 "To secure the prope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of the Seller, the Buyer shall obtain at its cost, from a first-class international bank in the Seller's country, a first demand bank guarantee amounting to maximum amount of liquidated damage of the contract, unless otherwise agreed, which shall be subject to the URDG758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or a standby L/C subject to the ISP98."(오원석·윤영미·이경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무위반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Liquidated Damage Clause: LD조항)의 활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p.20).

여 우선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해 적용되는 특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⁵²⁾

2) 실무상 유의점

CISG의 불명료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PICC이 일반원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PICC에 규정된 이자율에 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PICC에 제7.4.9조 제2항은 지급통화에 대한 지급장소에서 우량대출자에게 널리 적용되는 평균은행의 단기대출이자율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그럴 수 없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통화국의 평균은행 단기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장소 모두에서 그러한 이자율이 없는 경우, 지급통화국의 법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지급통화를 미국의 달러로 하여 한국이 지급장소인 경우,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평균적인 단기대출이자율이 적용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러한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금융시장의 평균적인 단기대출이자율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도 그러한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급통화국인 미국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CISG는 연체되고 있는 대금 및 이자금액에 대한 지급시기 및 이자계산방

51) 이자율을 규율하기 위한 노력이 무위로 끝났기 때문에 협약에는 이자율에 관련하여 흠결이 있으며, 각국의 법원과 국제상사중재법원의 결정은 판이하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제9조 제2항에 따른 국제적인 상관습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자율에 관한 국제적인 상관습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제7조 제2항에 따라서 일반적이고 통일된 규칙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이자율에 관한 조항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이자율은 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준거법에 따르고, 그것도 없으면,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칙이 지정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최준선 외 공저, 「로스쿨 국제거래법 - 이론과 사례-」, (박영사, 2011), pp.174-175).

52) 독일의 한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독일회사)의 대금지연에 대한 원고(헝가리회사)의 이자 지급요청에 대하여 법원은 제78조에는 이자율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이는 기타 적용가능한 준거법에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CLOUT Case No. 723: Germany, Oberlandesgericht Koblenz, 6 U 113/06, 19/10/2006).

법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PICC이 일반원칙으로 채택되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국내법에 의존하거나 매매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무자들은 법적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시 상대방과 이자 지급에 관하여 충분히 합의한 후, 상세한 표준약관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손해배상청구권과 대금감액권의 선택문제

1) 문제의 제기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대금감액권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구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어떠한 구제권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

2) 실무상 유의점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대금감액권 선택시 가장 먼저 중요한 기준은 바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여부이다.⁵³⁾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매도인에게 인도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매수인이 필요에 의하여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매수인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수령함으로써 초래된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대금감액권 선택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시장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인

53) 손해배상청구권은 대금감액권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금감액권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행사될 수 있다. 즉, 매도인이 불가항력으로 계약위반을 한 경우, 제79조에 의해 매도인은 면책되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제50조에 의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 물품의 가치이다. 만약, 인도시 물품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효과가 대금감액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한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수령에 따른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도시 물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그 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대금감액의 효과가 손해배상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매수인은 대금감액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수령에 따른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물품의 가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대금감액의 효과와 손해배상의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매수인은 거래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을 원한다면 대금감액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⁵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도인과의 교섭이나 소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금감액권은 매수인의 선언만으로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의 동의나 법원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든 계약위반에 대하여 다른 구제권과 병행하여 행사 가능하지만, 대금감액권은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인도하거나 예견가능성(foresseeability), 불가항력(force majeure) 등을 이유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 행사가능하다. 그러므로 실무자들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대금감액권의 선택시, 행사방법이나 제한요소를 신중히 판단하여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손해배상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1) 문제의 제기

54) 이천수·이양기, “비엔나협약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권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동서논문집」, (2002. 12), pp.44-45 참조.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시 계약서만 잘 작성하였더라면 시간과 비용의 낭비없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이를 잘 유의하여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실무상 유의점

국제물품매매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ICC표준국제매매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거래당사자들의 개별사안에 따라 이를 적절히 수정·보완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CC표준국제매매계약서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지연(10조)이나 하자있는 물품의 인도(11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우량대출자에 대한 은행의 평균적인 단기대출금리에 2%를 가산한 이자율(제6.2조)도 명시되어 있다.

ICC표준국제매매계약서는 국제매매계약서의 좋은 예로서, CISG가 규정하고 있는 제원칙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변경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ICC에서 제시하는 표준계약서가 모든 거래당사자들의 이익이나 필요에 부합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실무적 필요와 상황에 맞추어 이를 적절히 수정·보완 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상대국이 CISG의 체약국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 비체약국이라면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에 CISG를 준거법으로 명시하고, CISG로 커버되지 않는 문제는 PICC으로 규율되도록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ICC 작업반(Working Group)의 의장이었던 M.J.Bonell 교수는 계약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삽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CISG, and with respect to matters not covered by this Convention, by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⁵⁵⁾ (본 계약은 CISG의 지배를 받으며, CISG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PICC의 지배를 받는다.)

55) M.J.Bonell,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2nd ed.,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Irvington-Hudson, New York 10533, 1997, supra note 4. p.308.

그러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ICC표준국제매매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실무적 필요와 상황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여 활용하고, 준거법 조항에 CISG와 PICC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통일법인 CISG(1980)와 이를 해석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PICC(2004)을 중심으로 손해배상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실무상에서 계약위반이 발생하여 실무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응하고자 할 때 모호한 규정이나 판단곤란한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한 이러한 사안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실무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배상청구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시 미리 계약서에 약정손해배상액조항을 명시해 두어야 한다. 둘째, 이자지급청구시 이자율적용에 대하여 CISG에는 이자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PICC에 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PICC이 일반원칙으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시 상대방과 이자지급에 관하여 충분히 합의한 후, 상세한 표준약관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한다. 셋째, 손해배상청구권과 대금감액권 중 자신에게 유리한 구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하는 문제에 관하여 실제 인도시 물품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며, 반대로 물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면 대금감액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도인과의 교섭이나 소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모든 계약위반에 대하여 다른 구제권과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고, 대금감액권은 매수인의 선언만으로도 행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의 동의나 법원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고,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 행사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행사방법이나 제한요소를 신중히 판단하여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ICC표

준국제매매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실무적 필요와 상황에 맞추어 이를 적절히 수정·보완하여 활용하고, 준거법 조항에 CISG와 PICC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해배상청구시 유의할 점은 매도인이 계약체결시에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하는 손해, 매수인이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 그리고 면책되는 경우에 의한 손해, 피해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판례로만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피해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시나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고자 함에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배준일, “UN統一賣買法上의 損害賠償責任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 오원석, “國際物品賣買契約에서 ‘Liquidated Damage Clause’의 有效性和 實務的 適用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 오원석·윤영미·이경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위반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Liquidated Damage Clause; LD조항)의 활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0권,(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 오원석·최준선·허해관 공역,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법문사, 2006).
- 이병문, “유럽매매원칙상 매수인의 구제제도”, 「무역학회지」 제34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9).
- 이천수, “CISG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3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
- 오원석·이양기, “비엔나협약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권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동서논문집」, (2002).
- 최준선 외 공저, 「로스쿨 국제거래법 -이론과 사례-」, (박영사, 2011).
- 최홍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 Bianca, C.M. & Bonell, M.J. (Ed.),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Giuffrè, 1987).
- Bonell, M.J.,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2nd ed.,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Irvington-Hudson, New York 10533, 1997.
- Bridge, M.,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Ederlein, F. & Maskow, D., International Sales Law ; United Nations

-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Oceana Publication, 1992).
- Houtte, H.V.,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1995).
- Lando/Beale(e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 and II (Combined and Revised),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2000).
- Ramberg, Jan, Guide to Export-Import Basics, (ICC Services Publications, 2008).
- R.G. Lee,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Business Law, 1993).
- Schlechtriem(Hrsg.), Kommentar zum Einigkeitlichen UN-Kaufrecht-CISG -, 4. vollig neubearb. Aufl. C.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ünchen, 2004.
- Schwenzer, Commentary on Art. 74, IN: Ingeborg Schwenzer(ed),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Treitel, G.H.,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A Comparative Account, (Clarendon Press, 1988).
- Vogenauer, S. & Kleinheisterkamp J., Commentary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Oxford University Press Ltd., 2009).
- Zeller, B., Damages unde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Ltd.,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Precautions in light of practical affairs related to a claim for damages unde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Focusing on the CISG(1980) and PICC(2004) –

Hwang, Ji Hyeon
Choi, Young Joo

This study considered as precautions in light of practical affairs related to a claim for damages focusing on CISG (1980) and PICC (2004). Given summarizing contents of this study, those are as follows.

First, when exercising a claim for damages, proving the damages may be difficult and hard. Thus, there is necessity for stating the liquidated damages clause in contract given conclusion of contract.

Second, as for the application of interest rate given a claim for interest, CISG is not covered interest rate. PICC is covered interest rate. However, there is possibility that PICC will not be applied as general principles. Thus, to remove this insecurity and uncertainty, there is necessity for stating this in contract by deciding on the detailed standard stipulation after fully discussing about interest payment with the counterpart given sale contract.

Third, when a seller delivered non-conformity of the goods for contract, a buyer is desirable to exercise by discreetly judging the exercise method or limitation element on a problem of selecting and exercising remedy favorable to oneself out of a claim for damages and a right to reduce the price.

Finally, There was suggestion that the contract parties are desirable to utilize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properly this in line with own business-based necessity and situation based on the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 and to state CISG and PICC the governing law clause, in preparing contract.

This study is expected to possibly become guideline in which the damaged party exercises a claim for damages or aims to cope with the counterpart's exercising a claim for damages.

Key Words : Damages, Claim for damages, Calculation of damages.